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2차
○ 발 주 자 : 국립산림과학원
○ 협약대상 : ArcGIS Enterprise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한국에스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2차 용역**"에 대하여 "㈜한국에스리"는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대상물품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55,492,8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협약 물품 (소프트웨어 및 유지관리) 납품 (라이선스 증서 발급) 완료 시 제3조 협약금액으로 낙찰자가 제조공급사에게 일괄로 지급한다.

2026 년 4 월 15 일

"발주자"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한국에스리 (인)